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안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9. 19.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❶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❷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❸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법제처	책임자	과 장 정세희	044-200-6740
	미래법제혁신기획단	담당자	사무관 이현정	044-200-6739

연번	법령명	해당 별지 서식	소관부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호	고용노동부
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호, 제9호	국방부
3	병역법 시행규칙	제47호의4	
4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호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호의2	국토교통부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호의8, 제6호의13, 제31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7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5호	보건복지부
8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호	
9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호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호의4	
1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호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호의2	행정안전부
1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호의5	환경부
1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호의6	